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 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원무 부서장, 관련 부서장

제 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193호 (2015.11.10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제3호·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-93호, 2013.6.26.)을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했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 사항

-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(안 제4조)
  -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(만 19세 미만 또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)로 확대
  -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혈당측정검사지 외에 채혈침, 인슐린주사기, 인슐린주사바늘 지원
-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(별표 6)

지원대상자		기준금액	
		인슐린 투여자	인슐린 미투여자
제1형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제2형 당뇨병환자	만 19세 미만	2,500원/일	1,300원/일
	만 19세 이상	900원/일	해당사항 없음
임신 중 당뇨병환자		2,500원/일	1,300원/일

비고: 나이는 처방일 기준

- 시행 : '15.11.15. 부터

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고시 전문(붙임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가능)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윤학 국장 류항수

시행 : 보험 제 2015-551 (2015.11.11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ldm@kha.or.kr](mailto:ldm@kha.or.kr)